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일

산업통상부장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지역 R&D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마련
- 용어 정의 명확화를 통한 규정 해석 및 적용의 일관성 확보

2. 주요내용

가. 지역 R&D 활성화를 위한 기술료 감면 기준 명시

- 「산업 R&D 혁신방안('26.1.)」에 따른 지역 R&D 활성화 정책을 반영하여 기술료 감면 인센티브 신설(제11조제1항제6호)

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체계 반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이후 정액기술료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기술료 납부방식 선택 등을 위해 제출하던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대상 확약서 관련 조항 삭제(제3조제1항제14호, 제8조1항, 제16조제1항)

다.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 현행화

- 산업통상부 명칭 변경(제3조제1항제7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정책과
- 전자우편 : ii032740@korea.kr
- 팩스 : 044-203-47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tir.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정책과(전화
044-203-4512, 팩스 044-203-47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신·구조문 대비표

[illegible]

현행	개정안
납부 의무 등의 사항을 확약하는 서류(별지 제1호서식)를 말한다. 제8조(기술료의 징수 등 보고 및 납부) ① 기술료등납부 의무기관은 정부납부기술료 확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대상 확약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정부납부기술료의 감면)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 조사 또는 공통요령 제6조의 평가단을 활용하여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납부기술료의 감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에 따른다. <u><신 설></u> 6. 그 밖에 장관이 납부액의 전부	제8조(기술료의 징수 등 보고 및 납부) ① <삭제> 제11조(정부납부기술료의 감면) --- ----- ----- ----- ----- ----- ----- ----- 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관이 수행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7. 그 밖에 장관이 납부액의 전부

현행	개정안
또는 일부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일부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제재 등) ① 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u>정부납부기술료 납부대상</u> <u>확약서</u> ,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 매출액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을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등의 부정행위가 발견될 때에는 공통요령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제16조(제재 등) ①----- -- -----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대상 확약서 ,----- ----- ----- ----- ----- ----- -----

[별표 1]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등 처리기준 (제11조)

(변경 전)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등 처리기준

구분	세부내용	감면
해당 연구개발성과가 국가안보와 관련 된 경우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최종 사용자가 대한민국 정부인 경우	정부납부기술료 금액 전부 또는 일부
사회적·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연구개발기관에 발생한 경우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미납금액
연구개발기관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폐업하거나 영업장이 폐쇄 또는 멸실된 경우	미납금액
	집행 불능, 매각 후 결손 발생 등 법적 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	미납금액
	미납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법적 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	미납금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또는 파산의 경우	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통해 인정된 금액을 제외한 미납금액
해당 연구개발성과가 다른 기업에 적용되어 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	「탄소중립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으로 지원된 과제의 경우	정부납부기술료 금액 전부 또는 일부
공통요령 제51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국외기관의 경우	국내기관에 성과를 이전하기로 하는 경우 (단, 국외기관이 국내법인의 지사인 경우는 국내기관과 같은 기준으로 처리한다.)	정부납부기술료 금액 전부 또는 일부

※ 상기 구분 외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관련 서류 미제출, 매출액 축소 신고 또는 허위 보고 등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가 발견될 시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공통운영요령에 따라 제재 처분평가단을 통해 참여제한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1]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등 처리기준 (제11조)

(변경 후)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등 처리기준

구분	세부내용	감면
해당 연구개발성과가 국가 안보와 관련 된 경우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최종 사용자가 대한민국 정부인 경우	정부납부기술료 금액 전부 또는 일부
사회적·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연구개발기관에 발생한 경우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미납금액
연구개발기관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폐업하거나 영업장이 폐쇄 또는 멸실된 경우	미납금액
	집행 불능, 매각 후 결손 발생 등 법적 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	미납금액
	미납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법적 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	미납금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또는 파산의 경우	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통해 인정된 금액을 제외한 미납금액
해당 연구개발성과가 다른 기업에 적용되어 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으로 지원된 과제의 경우	정부납부기술료 금액 전부 또는 일부
공통요령 제51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국외기관의 경우	국내기관에 성과를 이전하기로 하는 경우 (단, 국외기관이 국내법인의 지사인 경우는 국내기관과 같은 기준으로 처리한다.)	정부납부기술료 금액 전부 또는 일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관이 수행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해당 기관의 사업장 소재지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기준)	정부납부기술료100분의 50 감경(납부요율 및 상한액 각 100분의 50)

※ 상기 구분 외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관련 서류 미제출, 매출액 축소 신고 또는 허위 보고 등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가 발견될 시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공통운영요령에 따라 제재 처분평가단을 통해 참여제한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대상~~ ~~확약서~~ <삭제>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별지 서식 제1호<개정 2022.1.1>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 확약서							
사 업 명							
과 제 번 호							
과 제 명							
주 관 기 관							
기술료등 납부의무기관							
총 사업수행 기간	20 . . ~ 20 . .						
확약서 제출 기한일	20 .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단위 : 원)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계	
	4차연도	5차연도		6차연도			
기술료 징수 또는 매출 발생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계획							
기술료등납부 의무기업규모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공기업 ☐		기타 ☐
정부납부기술료 상한액	000,000,000 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실사용액)×(중소기업 10%, 중견기업 20%, 대기업·공기업 등 40%)						
기술기여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기술료 감면여부	상한액 일시납* ☐ (*공문제출 필수)		청년고용 상한액 감면 ☐			기타 ☐	
납부기간 및 기술요율	납부 시작연도		납부 종료연도			정부납부기술료율	
	20 년		20 년			()%	
1.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제6조에 따라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해당 회계연도 재무제표 등 매출 발생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확약합니다. 2.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 중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여부 및 징수 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확약합니다. 3. 상기의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관련 서류 미제출, 정부납부기술료의 미납, 매출액 축소신고, 허위보고 등 부정행위가 발견될 시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32조 등에 따라 제재처분평가단을 통해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의거하여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기업명) : (대표자) (인)							